



제43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수학생선수의 발굴·육성 및 보호〉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86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붙임] 꿈나무선수 육성 사업 개요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5. 4.

3. 회 부 일 : 2026. 5.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재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성장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영재 등 뛰어난 기량을 지닌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학생선수의 발굴·육성·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학생선수의 발굴·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선발 기준, 훈련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1조의2(우수학생선수의 발굴·육성 및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학생선수의 발굴·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학생선수의 선발 기준, 훈련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검토의견

-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¹⁾,

1) 「학교체육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

“학생선수²⁾”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

- 현행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이에 따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수립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2024~2028)에서는 전문 학생 우수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지원, 지도자 연수기회 등 체육중·고등학교 경기력 향상 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우수 학생선수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체계를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조직적인 우수 학생선수 육성과 장기적인 관리 및 성장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못한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학생선수 발굴·육성·보호에 관한 시책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학교체육 정책의 관점에서 우수학생선수의 발굴·육성 및 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할 경우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안정적·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 육성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학생선수를 포함한 선수의 보호·육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학령별 우수선수 발굴·육성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수선수 지원체계 (대한체육회) >

국가대표 - 예비국가대표(대)-국가대표 후보선수(고)-청소년대표(중)-꿈나무선수(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선수 육성 의무와 우수 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재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있음⁴⁾.

4)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

또한, 같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는 우수한 꿈나무선수 발굴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할 차세대 국가대표를 육성, 우수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화 및 토대를 마련하고자 1993년부터 꿈나무선수 육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하계합숙훈련을 비롯한 훈련지원, 전담지도자 운영, 꿈나무 선수선발 및 경기력 측정·평가, 영재 국외전지훈련 등을 지원⁵⁾하고 있음.

- 한편, 개정안 제11조의2제2항은 우수한 학생선수의 선발 기준, 훈련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선수의 개인별 발달 속도와 종목별 특성이 다양하고, 대한체육회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우수선수 선발·육성체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수 학생선수의 선발 기준 및 훈련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종목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선수 선발·육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18.>(이하 생략)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5) 붙임 - 꿈나무선수 육성 사업 개요 참조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국가·지자체의 우수 선수 육성과 보호 시책 마련이 규정되어 있고, 대한체육회 등에서 우수 학생선수 선발,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의 개인별 발달 속도와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일된 우수 학생선수 선발 기준의 규정 마련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바 신중검토 의견임.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 대한체육회는 우수선수 지원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음
*국가대표 - 예비국가대표(대)-국가대표 후보선수(고)-청소년대표(중)-꿈나무선수(초)
- 법령을 통해 우수선수의 선발 기준 및 훈련지원 등을 규정할 경우, 종목별 유연한 대응과 전문기관의 자율적 선발을 제한하여,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발전 저해 우려

<시·도교육청> 신중검토

- (서울, 대구, 울산, 전남, 제주) 우수선수 발굴·육성·보호를 법적 의무로 규정할 경우, 과거 승리 지상주의, 과도한 훈련 등을 유발 우려
- (울산, 세종, 전북, 제주) '공부하는 학생선수' 및 '인권 보호'라는 현행 정책 기조와 전면 배치됨
- (울산, 전남, 제주) 우수 학생선수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에 대다수 학생선수에게 상대적 소외감 및 위화감 유발 우려
- (세종, 전북, 제주) 우수 학생선수 선발, 전문적인 훈련 지원은 교육청의 인력·예산 여건상 한계 명확

[붙임] 꿈나무선수 육성 사업 개요(대한체육회 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참조)

- 추진배경
 - 우수한 꿈나무선수 발굴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할 차세대 국가대표로 육성, 우수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화 및 토대 마련
- 추진기간 : 2026. 3. ~ 2026. 12. / 사업시작연도: 1993년
- 주요내용
 - **훈련지원(동·하계합숙훈련)**
 - 우수선수 육성 체계의 가장 기초단계인 꿈나무선수 발굴 및 훈련 지원을 통한 청소년대표→후보선수→국가대표선수로의 진출 기반 마련
 - **전담지도자 운영**
 -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지도, 정책 연구 활동 등 전반적인 사업 총괄을 위한 운영
 - **꿈나무 선수선발 및 경기력 측정·평가**
 - 꿈나무 선수 선발 후 체격, 체력, 경기력 등 향상도를 측정·평가하여 훈련성과와 개인별 훈련 처방 제시
 - **영재 국외전지훈련**
 - 꿈나무선수로 활약하며 우수한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에게 종목별 선진국에서 실전 훈련을 통해 신진기술을 습득할 기회 부여 및 경기력 향상 도모

문 의 처

02)6788-5193